#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49

2018. 9. 7. 기 획 경 제 위 원 회

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8년 8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9.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)

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9천여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최대 산

업 및 고용 중심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(G밸리)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해,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펀드 111억원을 조성·운용 중(서울시 총 출자금액 5억원 중 3억원 旣 출자)에 있으며.

나.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,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

# 2. 주요내용

# 가. 출자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)
-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
- G밸리 종합발전계획-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(시장방침 '15.11.)
-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·운용 계획(부시장 방침 '16.3.)

## 나. 출자 필요성

- 서울시 최대 IT중심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(창업→ 투자 → 성장 → 자금회수 → 재투자)
- 창업초기 중소기업 위주의 G밸리 內 기업특성상 사업규모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절실
- G밸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정부 요구사항 1순위는 자금 조달 문제

# 다. 펀드 개요

항 목	내 용
펀드명칭	G밸리-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
조성형태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 운 용 사	㈜플래티넘기술투자(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)
조성기간/투자기간	'16.8.4 ~ '25.8.3(9년)/'16.8.4 ~ '20.8.3(4년)
	총 111억원
출자자 및 출자금액	- 서울시(5억,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)/ SBA(5억)/
	구로구(3억)/금천구(3억)/모태펀드(70억)/ 플래티넘
	기술투자(15억)/ 산은캐피털(10억)
투자대상	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(7년 이내), 벤처기업 등

라. 출자대상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
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 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서울시가 운용 중인 G밸리 기업펀드에 투자를 약정한 금액을 중소기 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G밸리 활성화와 G밸리 기업펀드의 조성 배경

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고 당시에는 구로공단으로 불리었으나, 정부가 2000년대부터 IT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음.

#### <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현황>

- 산업단지 현황
  - 총 면 적 : 1,925㎡ (약 58만 평)
  - 1단지 → 구로구 구로동, 가리봉동
  - 2,3단지 → 금천구 가산동
- 입주기업 현황('16년 3월말 기준)
  - 업 체 수 : **9,832**개 업체 ※ 지식산업센터 113개소
  - 고용인원 : 160,151명
  - 업종 : IT, SW 등 지식기반산업(53%), 전기전자(24%), 기계(6%),
    - 섬유의복(6%), 기타제조(9%)



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, 환경, 주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'G밸리 비상 프로젝트 계획'1)를 수립·추진하고 있음.2)

<sup>1)</sup> G밸리 비상 프로젝트는 기업인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G밸리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현재 서울시는 산업 활성화, 녹지문화공간 확충, 보육주거기능 강화, 도로교통 개선, 제도정비 브랜딩 등 5 개 분야로 나누어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.

<sup>2) &#</sup>x27;G밸리'는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영문 이니셜인 'G'에 '밸리'를 합성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임.

○ G밸리 기업 투자펀드(이하 '펀드')는 창업초기인 중소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G밸리의 지역적 특성과 기업들의 요구³)를 고려하여 G밸리 기업들의 사업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음.

#### 다. G밸리 기업펀드의 운용 현황

- 서울시는 펀드 조성 규모의 확대와 펀드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4)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, 기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·금천구와 G밸리 관련 민관기관을 펀드 출자에 참여시켰음.
  - 서울시는 모태펀드와의 연계성 확보와 경기변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1차 펀드를 우선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차까지 순차적으로 펀드의 조성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임.

<G밸리 기업투자펀드 운영 계획>

항 목	내 용		
펀드명칭	G밸리 기업 투자 펀드 제1호~제4호		
펀드조성형태(조합)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		
자금조성 기간	2016년 ~ 2019년(4개년)		
펀드규모	총 600억원 (펀드별 150억원)		
조성금액 구성	서울시(20억원), SBA(20억원), 구로구(12억원), 금천구(12억원), (사)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 연합회(20억원),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(20억원) + 모태펀드 + 기타투자자 등		
펀드운용사	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를 대상으로 선정		
존속기간	8년 이상 (투자 4년)		
주요 투자대상	G밸리 소재 중소·벤처기업		

<sup>3)</sup> 서울시의 G밸리 입주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조달·운영 등 자금관리 분야이 고(26.2%), 가장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는 정책자금(금융) 지원(59.2%)임(2013년 5월, 사업주 표본 600명 조사)

<sup>4)</sup> 벤처투자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의 8개 부처가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조성('05.7월 결성, '15.9월 기준 펀드규모는 2조 7,310억원)하여 단일기업이 아니라 개별펀드(투자조합)에 출자하는 펀드로, 운용주체는 한국벤처투자 (주)임.

 제1차 G밸리 펀드의 운용사로 ㈜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됐고, 펀드결성 총회 개최와 설립출자금 납입을 거쳐 펀드가 최종 결성 되었음(2016. 8. 4).

#### <제1차 G밸리 기업투자펀드 현황>

항 목	내 용
펀드명칭	G밸리-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
조성형태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운 용 사	㈜플래티넘기술투자(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)
조성기간/투자기간	'16.8.4 ~ '25.8.3(9년)/'16.8.4 ~ '20.8.3(4년)
	총 111억원
출자자 및	- 서울시(5억) / SBA(5억) / 구로구(3억)/ 금천구(3억) /
출자금액	모태펀드(70억) / 플래티넘기술투자(15억) / 산은캐
	피털(10억)
투자대상	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(7년 이내), 벤처기업 등

#### <출자규약의 주요 내용>

○ 투자대상 - 주목적 투자와 특수 목적투자는 중복가능(예: G밸리 소재 청년기업 등)

구분	투자규모	내 용		
주목적	약정총액의 60%이상	●청년기업		
투자 (모태펀드)		- 업력 3년 또는 7년 이내의 창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이면서, 대표이사 만39세이하 또는 29세이하 임직원 50% 이상		
특수목적	출자금액 의 150%	● G밸리 소재 기업(본사, 지점, 공장 또는 연구소가 G밸리에 소자한 기업)		
투자		- 창업 중소기업 : "중소기업창업 지원법"에 의한 창업기업		
(서울시 등 4개기관)		- 벤처기업 : "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차법'에 의한 벤처기업		
		-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		

○ 펀드운용 보수 (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보수 규정 준용)

- 관리보수 : 2.5% [3년이내(조합약정총액 기준) / 3년 이후(투자잔액 기준)]

-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%이내

○ 기준수익률 : 6%(모태펀드 0%)

- 현재까지 펀드 조합원들은 총 출자 약정금액 111억원 중 40%를 납입하여 44억원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, 총 9개 기업에 29억 6천만원이 투자되었음.
  - 서울시의 현재 출자액은 2억원이며, 2018년 9월 20일에 20%, 2019년에 40%를 추가 납부할 계획임.

<G밸리 기업지원펀드 출자금 납입 현황 ('18. 08. 기준)>

(단위:백만원)

조합원	약정액	약정비율	납입액	납입비율	조합원유형
플래티넘기술투자(주)	1,500	13.5%	600	40.0%	운용기관(GP)
서울특별시	500	4.5%	200	40.0%	지방자치단체
구로구	300	2.7%	120	40.0%	지방자치단체
금천구	300	2.7%	120	40.0%	지방자치단체
(재)서울산업진흥원	500	4.5%	200	40.0%	기타단체
산은캐피탈(주)	1,000	9.0%	400	40.0%	금융기관
한국모태펀드	7,000	63.1%	2,800	40.0%	한국모태펀드
합계	11,100	100.0%	4,440	40.0%	

- 한편, 펀드운용 실적을 살펴보면, 조성금액(44억원) 대비 투자금액 (29.6억원)의 비율이 67.2%로 부진하고, 이 중 G밸리 소재 기업 (2건, 6억원)에 대한 투자 규모는 출자규약의 기준보다 저조한 측면이 있음.
- 출자규약상 출자기관의 투자규모에 비례해 희망 대상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므로, 서울시, 구로구·금천구,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액이 소규모(총 16억, 전체 14.4%)라는 점에서 정책적 투자 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.

#### <G밸리 펀드 투자실적>('18. 08. 기준)

(단위 : 원)

투자일	투자기업명	소재지	투자금액	업종	비고
'16.12.22	㈜레티널[1]	성동구 사근동	100,000,000	LetinAR렌즈 제조 (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)	청년기업
'16.12.29	㈜큐티젠 래버러토리스	금천구 가산동	100,000,000	줄기세포 활용 화장품 제조	G밸리 소재 청년기업
'17. 4.25	㈜멕스플로러	경기도 안산시	352,750,000	화학소재 "그래핀"개발	청년기업
'17. 6.22	㈜레티널[2]	성동구 사근동	199,950,969	LetinAR렌즈 제조 (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)	청년기업
'17. 6.30	㈜볼트크리에이션	성북구 삼선동	500,308,300	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	청년기업
'17. 9.18.	큐디브릭(주)[1]	서초구 양재동	100,020,000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	청년기업
'17. 11.14.	에코디엠랩(주)	청주시 흥덕구	116,144,000	의료기기용 세라믹 초음파센서 제조	청년기업
'18. 3. 21.	와이엠피(주)	경기도 안성시	500,000,000	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	청년기업
'18. 5.15.	큐디브릭(주)[2]	서울시 서초구	100,020,000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	청년기업
'18. 7.13.	㈜엑소코바이오	금천구 가산동	500,000,000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	G밸리 소재 청년기업
'18. 7.20.	㈜피알지에스앤텍	부산시 금정구	100,000,000	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	청년기업
'18. 8.24.	㈜레티널[3]	서울시 서초구	300,000,000	LetinAR렌즈 제조 (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)	청년기업

○ 특히, 현재까지 투자한 대상기업이 모두 청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G밸리 소재의 일반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#### 라. 종합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18조).
- 이번 출자 동의안에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5)를 출자의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.
- 오히려,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<sup>6</sup>)가 타당함.

<sup>5) 「</sup>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(조합의 결성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sup>1. ~ 3. (</sup>생략)

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(이하 "업무집행조합원"이라 한다)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. 이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,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<sup>1. ~ 4. (</sup>생략)

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.

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.

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.

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,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sup>6) 「</sup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 ⑤ 「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<sup>1.</sup>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
<sup>2.</sup>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또한, 동의안에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출자한 출자금액을 3억원(실제 2억원) 으로 오기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으로 시의회의 안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- 아울러, G밸리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펀드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, 시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출자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, 지분양도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.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- 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- 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- 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- 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<sup>3.</sup>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
<sup>4.</sup>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#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 49

제출년월일: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9천 여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최대 산업 및 고용 중심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(G밸리) 유망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해,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 펀드 111억원을 조성·운용 중(서울시 총 출자금액 5억원 중 3억원 旣 출자)에 있으며.

나.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에 의거,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

# 2. 주요내용

## 가. 출자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)
-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
- G밸리 종합발전계획-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(시장방침 '15.11.)
-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·운용 계획(부시장 방침 '16.3.)

# 나. 출자 필요성

- 서울시 최대 IT중심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(창업→ 투자 → 성장 → 자금회수 → 재투자)

- 창업초기 중소기업 위주의 G밸리 內 기업특성상 사업규모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절실
- G밸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정부 요구사항 1순위는 자금 조달 문제

# 다. 펀드 개요

항 목	내 용
펀드명칭	G밸리-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
조성형태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운 용 사	㈜플래티넘기술투자(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)
조성기간/투자기간	'16.8.4 ~ '25.8.3(9년)/'16.8.4 ~ '20.8.3(4년)
출자자 및 출자금액	총 111억원 - 서울시(5억,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)/ SBA(5억)/ 구로구(3억)/금천구(3억)/모태펀드(70억)/ 플래티넘 기술투자(15억)/ 산은캐피털(10억)
투자대상	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(7년 이내), 벤처기업 등

라. 출자대상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
#### 3. 참고사항

# 가. 관계법령

#### -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제20조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## 1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
- 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
-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(이하 "업무집행조합원"이라 한다)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, 그중 1인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.
  - 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2.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
  - 3.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.

-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3. "중소기업지원시설"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, 신제품·기술·연구개발,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·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4.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(이하 "창업투자회사"라 한다)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 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
- 5. "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"(이하 "창업투자조합"이라 한다)이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. 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#### 5.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
- 제14조(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)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 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 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 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기금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이성태 (☎2133 - 4823)